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 월회원에 제한 적용범위 삭제(안 별표 3)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3)
-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 근거별 적용 연령 표기 수정(안 별표 3)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 적용 범위 등의 확대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별표3] 사용료 감면 요율(제12조의3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관 련 근 거	요율	비고	구분	관 련 근 거	요율	비고
면제	(생 략)	면 제		면제	(생 략)	면 제	
감면	(생 략)	100 분의 80		감면	(생 략)	100 분의 80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만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생 략)				(생 략)		
	(생 략)	100 분의 50			(생 략)	100 분의 50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100 분의 10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100 분의 10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가임기여성)			수영장 월 회원 중 10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 감면율은 월회원에 적용한다.(삭제)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 개정안 별표3은 사용료 감면 요율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만 나이 개정법에 따라 연령 표기를 수정하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우 대상자를 체육센터 감면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감면 대상자를 월회원에 제한하였던 단서를 삭제하여 감면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음.
- 집행기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센터 활성화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